

< 연금소득 >

1. 연금소득의 의의

연금계약자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매월 등 단위로 지급받는 연금수입

2. 연금소득 과세체계

(1) 과세방식 : 수령연도 과세방식 채택(연금 납입연도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여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연도에 과세하는 방식)

(2) 과세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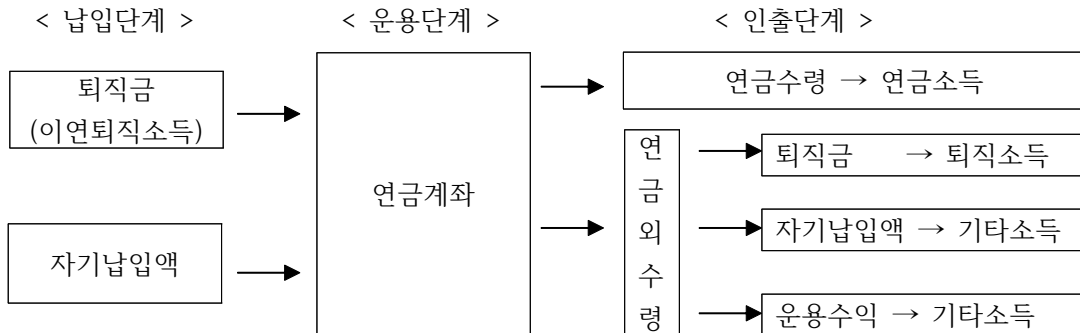
구분		납입연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	수령연도의 소득구분	
			연금수령시	연금외수령시
공적연금		납입액 전액을 연금보험료공제 (p242)	연금소득	퇴직소득
사 적 연 금	이연퇴직소득	-		퇴직소득
	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	연금계좌세액공제(p276)*		기타소득
	운용수익	-		기타소득

* 연금계좌세액공제 : $\min(①, ②) \times 12\%$ [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는 15%]

① $\min(\text{연금저축계좌납입액, 연 400만원}) + \text{퇴직연금계좌납입액}$

② 연 700만원

* 사적연금 과세체계



3. 연금소득의 종류

(1) 공적연금관련법*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

공적연금관련법* : 국민연금법, 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, 별정우체국법 등

(2) 사적연금소득

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	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(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)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*¹ 그 연금 ① 이연퇴직소득*² ②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→ 운용수익을 말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¹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

연금계좌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함

- ①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
-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(최소납입기간)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,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요건은 미적용
- ③ 과세기간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의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
이 경우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.

(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)

$$\cdot \text{연금수령한도} = \frac{\text{연금계좌 평가액}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)} \times 120\%$$

*² 이연퇴직소득 : 퇴직시 다음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

- 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(확정기여형) 연금계좌로 지급(확정급여형)되는 경우
- ㉡ 퇴직하여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

4. 비과세 연금소득

-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, 장애연금, 장해연금, 상이연금, 연계노령유족연금, 연계퇴직유족연금 등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
-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

5. 연금소득금액의 계산

$$\text{연금소득금액} = \text{총 연금액}^* - \text{연금소득공제}$$

*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과세함

5.1 총연금액의 계산

(1) 공적연금소득

$$\text{공적연금소득} = \text{과세기준금액}^* - \text{과세제외기여금}^*$$

*¹ 과세기준금액 : 과세기준일(2002년 1월 1일)을 기준으로 지급자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구분	과세기준금액
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	연금수령액 × <u>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</u>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
그 밖의 공적연금소득	연금수령액 × <u>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</u> 총 기여금 납입월수

*² 과세제외 기여금 : 과세기간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

(2) 사적연금소득

연금계좌 인출순서 :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㉠→㉢→㉡순서로 인출하는 것으로 봄

연금계좌의 구성

운용수익㉡		
이연퇴직 소득 (사용자 부담분) ㉢	자기납입액	
	납입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 ㉠	납입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㉡

인출순서 : ㉠ → ㉢ → ㉡

연금수령시: 과세제외 연금소득 연금소득

연금 외 : 과세제외 퇴직소득 퇴직소득

수령시

5.2 연금소득공제 : min(㉠, ㉡)

- ㉠ 공제액(p89참조)
- ㉡ 한도 : 900만원

6. 과세방법

- ㉠ 원칙 : 종합과세
- ㉡ 사적연금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함(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함 → 종합과세)

구분	내용
무조건 분리과세	㉢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운용수익 금액 중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
선택적 분리과세	위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

7. 수입시기

- 공적연금소득 :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
- 사적연금소득 : 연금수령날